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63호
- 발의자 : 이상욱 의원
- 발의일자 : 2025년 10월 17일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II. 제안이유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융합되는 디지털 전환의 필수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 및 정부 차원에서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는 클라우드 산업의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조례의 구성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그 외 자치법규의 체계와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문장 구성 등 기술적인 요소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시민이 자치법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III. 주요내용

- 가. 기본이념을 신설함(안 제2조 신설)
- 나. 교육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 신설)
- 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신설함(안 제10조 신설)
- 라. 교육감의 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마. 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활용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입법예고 : 2025. 10. 28. ~ 11. 1.(의견 :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7일 이상욱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63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클라우드 산업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의 체계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견인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미래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 최근 들어 AI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클라우드가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활용과 막대한 데이터 처리 기

능을 제공하는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주목받음에 따라 AI의 발전과 클라우드 성장이 곧 국가 혁신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4년 10월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sup>1)</sup>을 발표하여 클라우드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사항으로 범국가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 ①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②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③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추진 전략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교육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비전<sup>2)</sup>으로 삼고, 교육 전반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sup>3)</sup>을 시작으로 정보 인프라 구축을 넘어 체제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기본계획’<sup>4)</sup>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2025년은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교육자료로 전환) 등이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공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발표<sup>5)</sup>하여 디지털 교육정책을 확대·추진해왔습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정부 합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sup>6)</sup>과 교육부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sup>7)</sup>을 수립하여, 인공지능·소프트웨

1)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5~’27) “AI시대 클라우드 전략” (2024.10, 관계부처 합동)

2)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10.17.) 주요 내용 발표자료 1p 발췌

3)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교사들이 수업을 혁신하고, 이 과정에서 AI·디지털 기술이 교사와 학생을 보조. 교육부 제7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1p 발췌

4) 디지털 교육대전환을 위한 제7차(2024~2028)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24.10)

5)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2024.4, 교육부)

6)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10.17.)을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문화 등 5개 전략 목표에 19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음.

7)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2026~2028년 서울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서울시교육청(2025.11.)- 정보화정책심의 11월완료  
1.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 및 인재 역량 강화(디지털 교육)

어·정보보호 교육 확대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비롯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활용, 서울형 교육 스마트 정보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교육 등의 다양한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능정보시대에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첨단 과학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첨단 과학정보 기반 융합 교육을 통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sup>8)</sup>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지능정보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5년) 이후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사이버 교수학습·인공지능(AI) 교육 등 미래형 정보화 교육을 이끌어갈 추진력을 얻기 위해 센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클라우드 활용 사례<sup>9)</sup>

구분	사업명	클라우드 운영 주체
1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
2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민간
3	센클라우드 협업플랫폼	민간
4	독서로 및 학교도서관시스템	민간
5	교육행정지원 시스템	자체
6	목적사업비정산 시스템	공공
7	학생 맞춤형 영어학습 콘텐츠 개발·활용(자라나톡)	민간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자체
9	서울 수학 ON 스페이스 운영	민간
10	산업안전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민간
11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AI디지털리더러시 진단검사	민간

2. 미래지향형 디지털 교육행정 체계로의 전환(디지털 행정)

3. 지능형 교육·행정 지원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디지털 인프라)

8)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1~'25)

9)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디지털전략팀 별도 제공 자료(2025.12.5.) - 클라우드 활용 사례

구분	사업명	클라우드 운영 주체
	CBT(Computer Based Test) 시행	
12	학교시설 IoT 플랫폼	민간
13	민원콜센터(민원챗봇)	민간
14	나이스기반고입전형 시스템	자체
16	체납세입금관리 시스템	자체

- 다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미래 기술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의 혈행 조례는 여전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적극적인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형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 정보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정비한 것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 시의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조례의 개정 방식은 크게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으로 구분<sup>10)</sup>되며, 통

10) 법령안심사기준(2024)

어느 법령을 개정할 때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상적으로 일부개정은 제도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만을 수정·보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부개정은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정되는 조항의 수가 많아 문안을 수정하는 방식만으로는 개정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법규의 체계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하는 입법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동 조례안은 조례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기본이념’과 ‘정의’ 조항의 순서를 맞바꾸어 재배치하는 한편,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과 정보보안 체계 및 윤리원칙의 제정은 기존 조례의 기능과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인과 동시에 단순한 자구 수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되는 조문의 방대한 분량과 내용의 중요도 및 조문 이동에 따른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일부개정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전부개정 방식을 채택하여 조례의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재설계하는 것이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입법 방향성이라고 판단됩니다.

---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다.

-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2)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과 정의에 대한 검토(안 제2조~제3조)

- 안 제2조는 종전 제4조의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으로 수정하여 학생, 보호자 및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구성원이 충족해야 할 기본이념을 제시하였습니다.
- 안 제2조부터는 조례의 일반적인 입법형식에 따라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내용의 정의(제3조)와 책무(제4조) 규정을 순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조례안의 체계를 재정비하는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안 제2조는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학교구성원과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정보화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강조함으로써 기본이념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당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근거 법령에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외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동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인 클라우드 기반 교육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안 제4조(책무)에서 신설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근거 조항과 연계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를 따름으로써 자치법규와 상위법 간의 해석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 3)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신설 조문으로, 제1항에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시책 수립, 제2항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지능정보서비스의 적극적 도입 근거 마련, 제3항에서 유아교육 및 교육정보시스템(NEIS)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접근성 고려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 제1항에서는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으로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언적인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이 수반되도록 하여 조례의 규범력과 실행력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항은 교육감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지능정보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과 근거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sup>11)</sup>(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및 제20조<sup>12)</sup>(국가기

---

11)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2)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에 부합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의 자체 구축(On-premise) 방식<sup>13)</sup>에서 벗어나, 민간의 검증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서울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이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안 제3항은 교육감이 유아교육 및 교육정보시스템(NEIS) 운영 시 ① 개인정보 보호, ② 정보 접근성, ③ 이용 편의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교육정보시스템(NEIS)은 학생의 성적, 건강기록,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유출 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동 조항은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지능정보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학부모 및 교직원의 알 권리와 교육 서비스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 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개선 등을 통해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려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으로 사회적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

13) 자체구축(온 프레미스)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 비교 참조 <https://jinwookoh.tistory.com/163>

시도가 진행되는 점<sup>14)</sup>을 고려할 때, 정보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이용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 조치라 할 것입니다.

#### 4)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제3항은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방식을 정비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제1호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여 위촉직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① 정보화 전문가, ② 시민단체 추천인, ③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구체화하여 분류하였습니다.
  - 기존 조례의 단순 열거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 것은, 당연직 위원을 통해 정보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등 위원의 성격에 따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제4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한 차례만’으로 표현을 정정하고, 단서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 동 조항의 임기 연임에 관한 규정은 완화된 표현으로 자구 수 정한 것이므로 체계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시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서울특

---

14) 디지털 전환시대의 공공서비스 변화, (2023.8, 지역정보화) 참조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에 하던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자동화를 통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는 기존의 대량 문서를 보관, 처리, 보안 유지하는데 사용되던 관리 비용 대비 문서 보관과 보안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영역에서는 단순히 비용절감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는 공공의 가치를 반영하여 업무효율성과 정책대상의 수요를 반영하는 점점을 모색할 수 있는 점도 강조된다.

[http://klidwz.or.kr/webzine/vol139/sub\\_2\\_3\\_01.html](http://klidwz.or.kr/webzine/vol139/sub_2_3_01.html)

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15)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각각의 위원회를 규정하는 근거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 안 제10조 제4항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위 각종위원회 조례와 서로 배치되지 않아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안심사기준(2024) 16)은 종전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는 조항에 정한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표-2] 보궐위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하는 입법례(타법령)

###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다만, 법령안 심사기준이나 자치법규 길라잡이 상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 규정이라기보다 입법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권고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이하 생략

16) 법제처 「법령안 심사기준(2024)」, 412p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 따라서 위원 전체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켜 교체 시기의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 운영상 타당한 측면이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위원회의 성격과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중 특정 위원회<sup>17)</sup>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이후 선임될 경우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 있으나, 교육청 위원회의 대부분이 현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3] 서울시교육청 소관 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 입법례

<b>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b>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u>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b>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b> 제10조(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b>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b>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b>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b>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② 결원에 의하여 <u>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b>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b>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在任)기간으로 한다.</u>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추진위원회는 위원의 임기와 관계 없이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가 될 경우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됨.

-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일반적인 입법 관행에 배치되며, 위원 간 임기 불일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위원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수시로 진행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원회 전체의 구성원 교체 주기가 서로 엇갈리게 되는 경우 해당 정책 심의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방식 및 조례를 통한 입법 관행,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15728, 2025. 12. 11.)

#### 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검토(안 제11조)

-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 시책 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동 위원회 위원은 안전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동 조문은 안전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11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문 내용은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sup>18)</sup>의 내용과 같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본 조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개정 전 조례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조례 성격을 가진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바,

안 제11조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중복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6) 회의 등에 관한 검토(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위원회 회의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제1항) 한편, 위원장의 표결권을 명시하고 가부동수 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제4항).

- 또한 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그 대상은 담당

18)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사무관(또는 장학관)이 맡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8항).

- 제1항은 위원회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운영 전반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한 것으로, 회의 주재권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제4항은 이전까지 위원회 의결 시 표결을 거쳤음에도 가부동수일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가부동수일 때 부결로 보는 동 조항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다수결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 1인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신중함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제8항은 위원회의 제반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소관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한 것으로, 위원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 7) 지능정보 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검토(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체계 정비를 통해 동조 기준 내용을 제1항으로 배치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검증된 지능정보 기술 및 서비스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자칠판, 디벗 기기 등 새로운 정보화 기기 도입으로 학교 내 지능정보 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sup>19)</sup>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사전에 보안성이 검증된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8) 지능정보사회 윤리의식 제고에 관한 의견(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제17조를 새로 정비하면서 제1항에 기존 ‘자체적인 윤리원칙 제정’ 부분을 ‘지능정보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제1항의 지침 준수, 관련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노력을 그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 제1항<sup>20)</sup>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원칙을 담은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의 취지와 교육부 「교육분야 인

19)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2025.2.24.) 이새날 의원 발언 “고교학점제 수강 시스템 해킹에 의한 학생 및 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감...”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4.11.7.) 정지웅 의원 발언 “전자칠판의 IP 훔캡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다수

20)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무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공지능 윤리원칙」<sup>21)</sup>의 방향성을 토대로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초등-2023, 중등-2024, 고등-2025)」<sup>22)</sup>와 ‘초·중·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sup>23)</sup>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sup>24)</sup> 등을 개발·보급해오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기준<sup>25)</sup>(① 인간의 존엄성, ② 사회의 공공선, ③ 기술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윤리를 교육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교육부는 디지털 권리장전<sup>26)</sup>이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에 특화된 디지털 시대의 가치·원칙 정립 추진하고 있습니다.<sup>27)</sup>
- 따라서 현행 조례가 규정하는 ‘자체적인 윤리원칙 제정’은 「정보화 기본법」 제62조 제1항의 ‘윤리원칙을 담은 시책’과 맥락을 같이 하여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규범적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1) 교육부,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2022.8.10.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을 제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2297>

22)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자료’(2023.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51&q\\_bbsDocNo=20240520152046980](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51&q_bbsDocNo=20240520152046980)  
[https://buseo.sen.go.kr/buseo/bu10/user/bbs/BD\\_selectBbs.do?q\\_bbsSn=1240&q\\_bbsDocNo=20250828150703432](https://buseo.sen.go.kr/buseo/bu10/user/bbs/BD_selectBbs.do?q_bbsSn=1240&q_bbsDocNo=20250828150703432)

23) ‘초·중·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42종)’, 2025.8.28.

[https://buseo.sen.go.kr/buseo/bu10/user/bbs/BD\\_selectBbs.do?q\\_bbsSn=1240&q\\_bbsDocNo=20250828150901041](https://buseo.sen.go.kr/buseo/bu10/user/bbs/BD_selectBbs.do?q_bbsSn=1240&q_bbsDocNo=20250828150901041)

24)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 자료’ 2022.12.28.

[https://buseo.sen.go.kr/buseo/bu10/user/bbs/BD\\_selectBbs.do?q\\_bbsSn=1240&q\\_bbsDocNo=20221228140903000](https://buseo.sen.go.kr/buseo/bu10/user/bbs/BD_selectBbs.do?q_bbsSn=1240&q_bbsDocNo=20221228140903000)

25) 「인공지능 국가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2.17.) - 2020년 12월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의결

26) 「디지털 권리장전('23.9)」: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원칙과 기준 제시

27) 교육부, 2024.7. ,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선언」 - 디지털 교육 규범-

- 또한 이는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제20676호, 20260122) 제27 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에서도 ‘윤리원칙’을 제시하는 등 용어 사용의 정합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이를 실무적 성격을 가진 ‘운영 및 이용자 보호 지침’으로 변경하는 것은 포괄적인 윤리적 가치를 단순한 행정 절차나 기술적 수칙으로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취지를 살려 ‘윤리원칙’의 규범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제4항에 대해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행정관리담당관-15728, 2025. 12. 11.) 그 외 조문에 관하여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바 있음.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 10. 30.)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진석(2180-8266)
----------	----------------	-------	----------------